#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31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이연희·박상혁·문진석

박홍배 · 정성호 · 김정호

이정문 • 문금주 • 이춘석

김남희 • 허종식 • 서미화

홍기원 • 한민수 • 복기왕

이광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

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 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 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용 소방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한 방화벽, 소화용수 설비, 자동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전용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충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에 대한 전용 소방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
	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
	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한 방화벽, 소화용수설비, 자
	동감지장치,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용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